

공무원이 암의 일종인 악성조직구증식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1993. 6. 23. 판결 92구22871. 인용

【사건명】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이 암의 일종인 악성조직구증식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직무수행상 지나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 병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8호

【당사자】

원고 김○○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 피고가 1992년 3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부결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연수원 총무과 용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양○○가 1991년 12월 6일, 02:45경 선행사인 악성조직구증식증, 직접사인 열성 쇼크로 사망하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인 악성조직구증식증이 현대의학에 의하여서도 그 발병원인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

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2년 3월 9일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부결하는 주문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하나로 그 제8호에서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직무의 수행이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또는 야간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들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갑 제6 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과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위 망인은 1949년 9월 24일생으로 1977년 2월 21일 법원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법원 ○○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다가 1990년 7월 1일부터 ○○연수원 총무과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아 용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재고량조사, 90년도 하반기 소요물량 조사 등 소관 업무 파악을 위하여 자주 시 간외 근무를 하였으며 1990년 12월 10일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우수공무원표창까지 받았다.

위 망인은 특히 1991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는 전년도 예산관계서류 및 장부 정리, 92년도 주요사업계획(안)작성 제출 및 계속사업계획(안) 작성, 92년도 예산안편성자

료수집 및 92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요구서의 작성과 그 밖의 물품의 구입, 청사의 각종 공사의 계약 사무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2, 3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위 망인은 1990년 4월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1991년 10월 31일경부터 몸이 나른하고 두통이 있어서 감기 정도로 알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일반병원에 3일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고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병가를 받아 집에서 2주간 쉬었으나 계속 열이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통이 더욱 심하여 같은 달 7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진찰결과 원인 불명의 발열로 약 2주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할 것이라고 하여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3차에 걸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해 12월 5일 악성조직구증식증으로 밝혀져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으나 하루만인 같은 달 6일 02:45경 악성조직구증식증으로 인한 열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나, 위 망인의 악성조직구증식증이 언제 발병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악성조직구증식증이란 조직구(감염에 대한 방어기능과 면역기능을 하는 식세포 중 조직에 있는 세포를 지칭함)에서 생긴 암의 일종으로 발병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발병한 환자는 정신상태

가 불량하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여 발병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그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망하기 까지 수행한 직무는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수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이미 발병하여 진행 중인 악성조직구증식증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공/근로복지공단